

(사)대한화장품협회

KOREA COSMETIC ASSOCIATION

직인생략

0723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, 907(금산빌딩) /전화*02-7858-0564 /팩스*02-782-6659
담당부서 : 경영지원팀 부서장 : 임종근 부장 담당자 : 변은지 과장 e-mail: eunji@kcia.or.kr

대한장협: 제3-117호

시행일자: 2026. 3. 24.

수신자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: 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 실시 안내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협회는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20767호, 2025. 8. 1., 일부개정) 및 「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 일부개정)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되어 ‘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
3. 상기 관련, 우리 협회는 불임과 같이 ‘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웨비나) 교육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, 수강을 원하는 교육대상자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(<https://edu.helpcosmetic.or.kr/main.do>)에서 정확한 내용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교육 제반사항 준비로 인해 교육신청기간 종료 후 취소·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검토하고 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_실시간웨비나 교육 실시 안내 1부. 끝.

(사)대한화장품협회장

수신처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이후 최초로 교육에 참여하는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,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,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, 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

2026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(웹비나) 교육 실시 안내

□ 교육과정 소개

목 적	교육대상	참여가능교육형태
화장품법 제5조제7항에 따른 책임판매관리자에 대하여「화장품법 시행규칙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교육 과정	·최초교육자: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필요 ·보수교육자: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(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수료한 자)	온라인 및 오프라인 또는 실시간웹비나
	·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	오프라인 또는 실시간웹비나
	·제조업자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아 6개월 이내 교육을 받아야하는 제조업자책임판매업자(대표자)	*온라인 형태로의 참여는 수료 인정되지 않음

※법적 근거

- 「화장품법」(법률 제20767호, 2025. 8. 1., 일부개정) 제5조제7항~제10항 영업자의 의무 등
- 「화장품법시행령」(대통령령 제33913호, 2023. 12. 12., 타법개정)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
- 「화장품법시행규칙」(총리령 제2060호, 2025. 10. 31., 타법개정) 제14조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
- 「화장품 법령·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」(식약처 고시 제2022-2호, 2022. 1. 14., 일부개정)

*오프라인(집합)교육 대상자의 경우, 실시간웹비나 교육 형태로의 참여도 수료로 인정함.

□ 교육 프로그램

시간	교과목	세부내용
09:00-10:00	강의실 입장(성명/ 핸드폰번호 기재 후 입장)	
10:00-11:30 [90분]	화장품법의 이해 (품질, 안전관리 중심)	화장품 법령 체계, 화장품 영업의 종류 및 영업자 준수사항, 화장품의 품질관리 기준 및 제조판매 후 안전관리기준, 화장품의 취급 및 감독·벌칙 등
11:30-12:00 [30분]	2026년도 화장품법의 재개정 사항	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의 최근 변경 사항 등
12:00-13:00	점심시간간(점심시간은 교육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)	
13:00-14:00 [60분]	화장품의 안전성 평가	안전성평가 정의, 세계 동향, 평가 방법 등
14:00-15:30 [90분]	화장품의 문서관리	화장품 제조업자·책임판매업자가 관리해야하는 문서·기록, 예시 등
15:30-17:00 [90분]	화장품 표시·광고 준수사항	화장품의 표시·기재, 광고에 대한 세부 규정, 가이드라인 등
17:00-	교육평가	10개 문항 출제. 60점(6개 문항) 이상 득점 필요.

※ 출석체크: 입실/퇴실 서명과 함께 교육 중 랜덤으로 교육생을 호명하여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.

※ 교육일정 및 교과목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□ 교육 참여일정

구분	접수기간 및 접수처	실시간온라인 교육 장소	교육시간	모집인원
실시간 웹비나	03월24일(화), 00:00 ~ 04월07일(화), 23:59	04월14일(화), 10:00-17:00	6시간	100명
url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교육신청 edu.helpcosmetic.or.kr	웹비나시스템(나우앤나우) kciawb.nownnow.com		

※교육 접수기간, 모집인원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※교육 종료 후 평가 실시.

□ 교육 참여 절차/ 수료기준

교육대상	교육 참여 절차	수료기준
법정교육 대상 전체 ■ 책임판매관리자 (최초/보수) ■ 화장비누 취급자 (업등록 예정자) ■ 교육명령수령 대표자	①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(edu.helpcosmetic.or.kr)에서 회원가입 ※주의!! 반드시 법정의무교육 대상자가 직접 회원가입을 하고, 가입정보는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상에 기재된 사항과 동일하게 기재.(영업 등록 예정자는 예정사항으로 기재) ↓ ②교육신청< 법정과정< 본인에 해당하는 형태(실시간웹비나)로 교육신청 및 교육장소 일자 확인 ※ 집합교육< 법정과정_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실시간웹비나 교육 ↓ ③교육 당일, 실시간웹비나시스템(kciawb.nownnow.com)웹페이지에서 로그인 정보 기재 후 입장 → 스트리밍 페이지로 이동 ※교육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. 크롬 브라우저로 1명 1회선 로그인 요망. ※로그인 관련 문의는 챗봇 활용. ↓ ④교육 수강(10:00-17:00, 총 6시간) ※총 288분 이상(총 교육시간 중 80% 이상) 수강 시 교육 이수로 인정됨. ※교육 중간 랜덤으로 출석 확인 진행. 15분 내 미응답 시 미수료 처리. ↓ ⑤수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(17:00-자정 전까지) ※총 10문항 중 6문항 이상(60점 이상) 맞추면 수료평가 통과 ※교육종료시부터 당일 자정 전까지 평가 가능(과락 시, 담당자 별도 연락함) ↓ ⑥교육 종료 5일 후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수료증 출력	온라인 교육 80% 이상 교육 이수 + 수료평가 60점 이상 득점 ▶수료증은 위의 교육 수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, 실시간교육 수강 완료 확인 이후 5일 이내 온라인 발급됨.

□ 교육 수강비 및 납부방법

-교육 수강비 : 80,000원(비과세)

-납부방법 :

교육형태	교육대상	교육비	교육비 납부 방법
실시간웹비나	책임판매관리자(최초/보수) 화장비누 취급자(업등록 예정자) 교육명령수령 대표자	80,000원 (비과세)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(edu.helpcosmetic.or.kr)→ 수강신청→ 법정과정 교육 신청 시 납부

※ 교육비 환불은 교육센터에 공지한 환불규정에 따라 집행됨을 알려 드립니다.

□ 교육참가 시 유의사항(필독)

- 가. 교육 실시 상황에 따라 모든 교육일정(교과목, 교육일, 개최 횟수, 모집 인원 등)은 변경·운영될 수 있습니다.
- 나. 교육 대상 본인이 신청한 교육 형태, 일정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됩니다. 본인이 대상이 아닌 교육과정의 수료, 신청한 일정과 다른 일정으로 참여한 교육은 수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공지합니다.
- 다. 사전 안내된 신청 기간에만 신청 및 취소·환불이 가능하며, 교육수요가 30%미만인 경우 폐강,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, 공지한 신청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 법정교육은 유료교육으로 교육비 결제까지 완료 시 접수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길 바랍니다.
- 라.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교육대상자가 직접 교육을 신청하고 수료하여야 하며 대리 참석이 불가합니다. 또한, 법정교육대상자가 교육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관련 법령: 화장품법제41조(과태료)제1항제4호

□ 교육관련 문의

문의 내용	연락처
교육관련 법령, 교육대상, 운영 등 교육의 전반적인 사항	경영관리실 변은지 과장 eunji@kcia.or.kr
교육접수 및 환불 문의	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내 1:1문의
실시간 온라인 시스템 접속 오류, 영상 및 음향 송출 확인	챗봇 또는 시스템 운영국 02-3149-4811